

# 충청북도수영장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심 사 보 고

1995. 12.

교육사회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5년 12월 19일

○ 회부일자 : 1995년 12월 19일

다. 상 정 일 자 : 1995년 12월 26일

제 120회 정기회 제 8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중등교육국장 전 태 식)

가. 제 안 이 유

청주, 충주수영장을 신설함에 따라 수영장이 없는 청주북부지역과 충주지역의 학생과 일반시민에게 생활체육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체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함

나. 주 요 골 자

- 현행 충청북도수영장외에 청주, 충주수영장을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수영장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로 규정함
- 수영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영장장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하도록 함
- 수영장에서 실내수영장은 선수훈련용으로, 실외수영장은 학생 및 일반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던 원칙을 삭제함

### 3. 검토 보고

(전문위원 김 영 민)

충청북도수영장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

본 조례는

청주수영장과 충주수영장 설치가 지방교육차지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의  
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승인함에 따라

제1소 규정중 "충청북도 수영장(이하 "수영장"이라 한다)"을 "수영장"으로  
개정하고

제2조 현행 충청북도 수영장 위치를 명칭 및 위치로 구분 "별표"로 하고

제4조 장장을 "충북체육고등학교장이 검토토록"하던 것을 "지방행정주사로  
보한다"로 하고

제6조 사용구분을 삭제하여 수영장이 없는 청주북부지역과 충주지역의 학생과  
일반시민에게 생활체육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체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 
하는 것 등으로서

현행 충청북도 수영장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를 국민체육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 
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 의 및 답 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경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없 음

8. 조 례 안 : 별 첨

9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 첨